

권장서식:공동주택

AB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작성예시

[작성 일자 /연/월/일]

결 재	소방안전관리자	관리소장	임주자대표



목 차

장	절	목 차 명	페이지
제1장		일반사항	1
	1.0	목적	1
	2.0	적용근거	1
	3.0	적용범위	1
	4.0	책임과 권한	1
	5.0	문서작성 및 기록유지	2
제2장		예방 및 완화	3
	6.0	일반현황 등의 작성	3
	7.0	자체점검	3
	8.0	업무대행	3
	9.0	일상적 안전관리	4
	10.0	화재예방 및 홍보	4
	11.0	화기취급감독	5
제3장		대 비	5
	12.0	소방안전관리위원회	5
	13.0	자위소방대·초기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6
	14.0	교육훈련 및 자체평가	6
제4장		대 응	6
	15.0	비상연락	6
	16.0	초기대응	6
	17.0	피난유도	6
제5장		복 구	7
	18.0	화재피해 복구	7
	[붙임1]	소방대상물 현황표	8
	[붙임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운영	14
	[붙임3]	소방교육훈련 및 평가계획·결과	18
	[붙임4]	비상연락 체계	22
	[붙임5]	초기대응장비 및 절차	23
	[붙임6]	피난계획 및 방법	25
	[붙임7]	피난복구계획 및 지원	27
	[붙임8]	화기취급작업 신청·허가	28
	[붙임9]	피난안내도 작성	30
	[붙임10]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31
	[붙임11]	공동주택 하자보수 관리부	32
	[붙임12]	소방시설 오동작 관리대장	33
	부록		34

개정이력

[illegible]

[AB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제1장 일반사항

1.0 목 적

이 계획의 목적은 [AB공동주택]의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대비하고 화재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복구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2.0 적용근거

2.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2.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3.0 적용범위

3.1 이 계획은 [AB공동주택]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상시 거주·근무인원 및 방문자에 대해 적용한다.

3.2 이 계획은 화재로 인한 재난의 예방·완화, 대비, 대응, 복구 단계에 대해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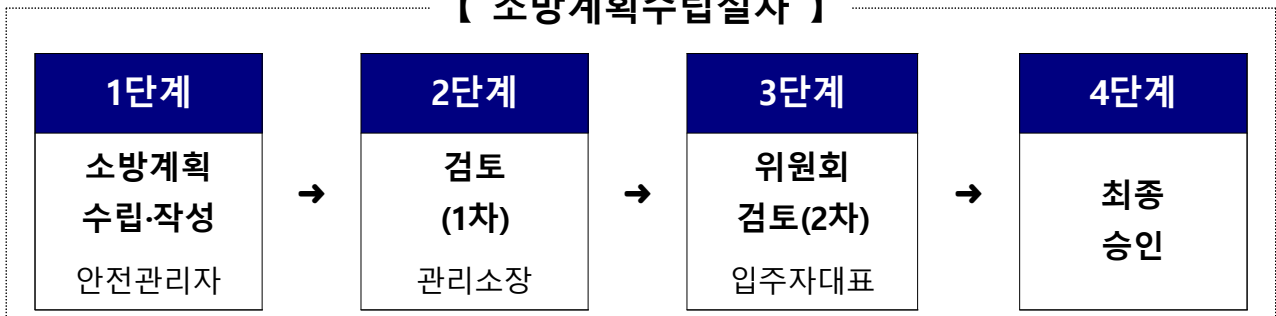
4.0 책임과 권한

명 칭	주요 책임과 권한
[입주자대표]	■ [소방계획을 수립·실행하는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관리소장]	■ [소방계획을 수립·실행하기 위한 관리적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안전관리자]	■ [소방계획을 수립·실행에 대한 실무적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거주/근무자]	■ [소방계획의 수립·실행에 참여하고 실천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5.0 문서작성 및 기록관리

- 5.1 소방계획의 수립 시 대상물의 안전정책, 내부규정 및 다른 안전관리 계획을 사전에 검토하여 반영해야 한다.
- 5.2 차기년도 소방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내용을 검토한 후 [입주자 대표 : 이대표(실명)]에게 최종 승인을 받는다.

【 소방계획수립절차 】



- 5.3 소방계획은 반드시 문서[종이, 전자문서 등]로 작성하여 [2]년간 [보관장소 : 관리사무실]에 보관해야 한다.

제2장 예방 및 완화

6.0 일반현황 등의 작성

소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건축물의 현황 및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작성·관리하고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를 게시해야 한다.[붙임1,10]

7.0 자체점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아래와 같이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사용승인일: 05년 8월 2일**

구 분	점 검 시 기	점 검 방 식
☒ 작동기능점검	21년 2월 5일	☐ 자체 ☒ 외주
☒ 종합정밀점검	21년 8월 3일	☐ 자체 ☒ 외주

비고 : 추가적인 정보 또는 이행 시 주의사항 등 작성

8.0 업무대행 (업무대행 시에만 작성)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거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구 분	내 용
대행업체	업체명 한국소방
	연락처 주인력(000) / 1234-1235 / 010-1234-1235
계약사항	계약기간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12개월)
	계약범위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 기타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관리감독	감독자 홍길동(시설팀/소방안전관리자)
	감독사항 월 1회 방문 및 점검결과 확인 / 계약이행여부

비고. 감독자는 업무대행업체 방문(월1회) 시 점검체크리스트 확인

9.0 일상적 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예방 및 피해완화를 위해 일상적 안전관리 활동을 아래와 같이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9.1 일상적 안전관리계획

구 분	관 리 항 목	관 리 주 기				관리계획
		일	주	월	분기	
소 방 시 설	수신기	✓				매일(오전)
	소화기, 소화전		✓			매주(월요일)
	소화펌프			✓		매월(5일)
화 기 취 급	가연물 적재관리		✓			
피난방화시설	방화문 등 관리상태		✓			
화기취급감독	공사, 정비, 보수 시 화기취급감독자 지정관리					

9.2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대리자 지정현황

작성일자	대리자 성명	대리기간	지정사유	확인(관계인)
21.7.01	이안전	21.7.26.~21.7.30	하계휴가	이소장

비고. 여행,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퇴직과 동시에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지정(30일 이내)

10.0 화재예방 및 홍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화재예방 및 홍보 활동을 아래와 같이 실시해야 한다.

홍보방법	계 획	홍보방법	계 획
☐ 홍보주간(기간) 운영		☒ 홍보물(리플렛, 스티커) 배부	1~12월
☒ 포스터, 표어 전시	1월~12월	☒ 현수막, 배너 설치	11~2월
☒ 영상물 상영	1~12월	☐ 모바일 App, SNS 활용	
☐ 체험시설(체험관)견학		☐ 구내 캠페인 방송	
☐ 문서, 이메일 공지		☐ 기타()	

비고.

11.0 화기취급감독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예방을 위해 화기취급작업을 사전에 허가하고 화재 감시인이 입회하여 감독하는 등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붙임8]

순번	허가일자	허가장소	작업종류	화재감시인
1	21.2.5	기계실	용접·용단작업	홍길동

제3장 대 비

12.0 소방안전관리위원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안전관리 전반(예방,대비,대응,복구)에 대한 심의·조정·의결을 위해 소방안전관리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설치하고 운영한다.

12.1 구성현황

구 분	소 속	성 명	위촉일
위원장	입주자대표	이대표	20.1.1
위 원	동대표	이소방	20.1.1

비고. 위원회 구성현황 : 위원장, 위원 3명 * 간사 : 소방안전관리자(홍길동)

12.2 운영현황

개최일자	회의내용 및 조치계획
21.1.10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일정 협의(2.5 점검실시)

비고.

[참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조제2항 관련 다수 소방대상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건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13.0 자위소방대·초기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에 따라 구성·운영해야 한다.[붙임2]

14.0 교육훈련 및 자체평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내지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내지 제15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붙임3]

일 자	장 소	대 상
21.1.10	회의실 및 야외	☒ 자위소방대 ☒ 재실자, 거주자

비고. 참석인원 재실자 및 거주자 100명 / 자위소방대 18명

제4장 대 응

15.0 비상연락

화재 시 신속하고 명확하게 화재를 경보하고 상황을 전파해야 하며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야 한다.[붙임4]

16.0 초기대응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 시 필요한 초기소화, 응급구조 및 방호안전조치 등 초기대응절차를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붙임5]

17.0 피난(유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피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붙임6]

제5장 복 구

18.0 화재피해의 복구

화재로 인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히 정상상태로 복귀하기 위해 피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다.

18.1 피해복구(단기·장기복구)

화재로 인한 피해 복구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장/단기 피해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할 수 있다.[붙임7]

붙임 1

소방대상물 현황표

1

건축물 일반현황

명칭	AB공동주택										
도로명주소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170										
연락처	☐ 관리주체 AB관리소 ☐ 책임자 이소장_ ☐ 연락처 1234-1234										
규모 / 구조	☐ 건축면적 1,234㎡ ☐ 연면적 12,345㎡										
	☐ 지상 15층 /지하 1층/ 6개동 ☐ 높이 48m										
	☐ 세대수(가구수) 370세대 ☐ 계단구조 피난계단										
	☐ 구조 지상층 철근콘크리트조 지하층 철근콘크리트조 ☐ 지붕 슬라브										
	☐ 용도 공동주택 ☐ 사용승인 2005/08/02										
계단	☐ 동별 ☐ 구조(라인) ☐ 비고										
	701~104		1~2, 3~4		B1F~15F (제연설비 ☐ 유 ☒ 무)						
	705~706		1~2		B1F~10F (제연설비 ☐ 유 ☒ 무)						
승강기	☐ 승용 3대 ☐ 비상용 3대 ☐ 피난용 ____대										
	701~704 동			705~706 동			동				
	승용	비상	피난	승용	비상	피난	승용	비상	피난		
	2대	2대	-대	1대	1대	-대	대	대	대		
관리현황	선임현황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성명		선임일자			성명		선임일자		
		홍길동		20.1.1			이안전		20.1.1		
		☎ (유선) 1234-1234 (휴대전화) 010-1234-1234									
	업무대행	☐ 대행업체 : 한국소방 ☐ 연락처 : 1234-1235									
		☐ 등록번호 : 20-0000 ☐ 대행기간 : 21.1.1 ~ 21.12.31									
화재보험	가입기간		보험사명		가입대상		가입금액				
	21.1.1~21.12.31		AB보험		AB공동주택		1억원				

② 건축물 위치 현황



■ 세부현황

구 분	대 상	비 고
관할소방서	00 소방서	1.5Km (5분)
연소 확대 우려구역(건물)	00 초등학교 00 중학교	15m

④ 소방시설 일반현황

소 화 설 비	☒ 수동식소화기 ☒ 자동확산소화기 ☒ 자동소화장치	
	☒ 옥내소화전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 분말소화설비	☐ 불활성기체소화설비
	수원	☒ 일반수조 ☐ 고가수조 ☐ 기타(_____) *유효수량: 주(30m³), 보조(10m³)
경 보 설 비	☒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기 ☐ 통합감시시설	
	☐ 자동화재속보설비 ☐ 누전경보기	
	☐ 비상벨설비 ☐ 자동식싸이렌 ☐ 단독경보형감지기	
	☒ 비상방송설비	☐ 가스누설경보기
	☒ 수신기(모델/제조사) : R형수신기/00전자	
피 난 구 조 설 비	☐ 피난사다리 ☐ 완강기 ☐ 구조대 ☐ 미끄럼틀 ☐ 피난로프 ☒ 공기안전매트 ☐ 간이완강기	
	☐ 방열복 ☐ 공기호흡기 ☐ 인공소생기	
	☒ 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 객석유도등	
	☐ 유도표지	☒ 비상조명등
	☐ 기타 : _____	
소 화 용 수 설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기타 : _____
소 화 활 동 설 비	☐ 제연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 연결살수설비	☐ 연소방지설비
	☒ 무선통신보조설비	☒ 비상콘센트설비

⑤ 소화활동설비 현황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	☐ 동별 구역 ※ 부록-1참조(참고4) - (701~704동) 2개 구역 - (705~706동) 3개 구역			
	방수구	☐ 전용 ☒ 겸용 ☒ 위치 옥내소화전함			
	방수기구함	위 치	701~704동	705~706동	
		지 하	B1F	B1F	
		1F~10F	2F,5F,8F	2F,5F,8F	
		11F~20F	11F,14F,17F,20F	11F,14F,17F,20F	
		21F~30F	23F	23F,26F,29F	
		31F~40F		32F,35F,38F	
		41F~45F		41F,44F	

⑥ 피난·방화시설 및 방염 현황

피 난 시 설	비상구	동 별	701~704동	705~706동		
		위 치	1층, 옥상	1층, 옥상		
		수	1개소	1개소		
	계단	☐ 직통계단 ☒ 피난계단 ☐ 특별피난계단 * 계단구분 (예) :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 계단의 이해 - 직통계단 : 각 층에서 계단으로 가는데 계단실 앞 출입문이 없음 - 피난계단 : 각 층에서 계단으로 가는데 계단실 앞 출입문이 1개 있음 - 특별피난계단 : 각 층에서 계단으로 가는데 계단실 앞 출입문이 2개 있음				
		대피시설	☐ 대피공간 ☐ 하향식피난사다리 ☒ 경량칸막이 ☐ 피난안전구역 ☐ 인증대체시설 * 설치 위치 : 앞 베란다 불박이장			
		물품	☒ 공기호흡기 ☒ 방열복 ☐ 기타 (____) * 수량 : 공기호흡기 2개, 방열복 2개			

방 화 시 설	방화구획	☐ 면적 별 ☒ 층 별 ☐ 용도 별
	제연구역	☒ 장소(특별피난계단 계단실)
	내 부 마감재료	☒ 불연재료 ☐ 준불연재료 ☐ 난연재료 ☐ 기타 ()
방	염	☒ 방염물품(커튼, 카펫) ☒ 설치위치(지하 헬스장)
위 험 물 질	☒ 품명 4류 2석유류 ☒ 수량 1,000리터 ☒ 저장위치 발전기실 * 지정수량 : 1,000리터, CAS # 000000, UN # 0000000	
	☒ 화재 시 소화활동 계획 - (소화설비) 자동식소화설비 - (소화활동) 가스계소화설비 작동(수동/자동)	
7 기타 위험물질 및 시설 현황		
전 기 시 설	☒ 수전용량 9,000KW ☒ 비상발전기 2,500KW(B3F 발전기실)	
	☒ 변압기 5대 (B1F 전기실) ☒ 누전차단기 ELV(변전실, 발전실)	
	☒ 화재 시 비상조치 계획 - 공급차단(Shut-off) 및 비상발전기(B1) 가동	
가 스 시 설	☒ 종류: 가연성가스(LNG) ☒ 용도: 난방, 취사	
	☒ 정압실: B1 ☒ 가스누설경보기: B1	
	☒ 가스누설자동차단기: B1 ☒ 가스 주 차단기 : 각동 1층	
	☒ 가스업체 : 한국가스 ☒ 연락처 : 1234-1235	
	☒ 화재 시 비상조치 계획 - 가스공급 주 차단밸브(1F) 차단(Shut-off)	
기	타	☒ 흡연구역 현황 : 1층 흡연장 * 별도 구획된 흡연구역 내 소화기 1대 배치

붙임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운영 ※ 부록-3참조

① TYPE- I (3급* 또는 2급**) *3급(전체대상), **2급(상시근무인원 50명 미만)

편 성	자위소방대	☐ 편성인원 : 대장 1명, 부대장 1명, 대원 6명 ☐ 조직구성 ☒ 비상연락팀(2명), ☒ 초기소화팀(2명), ☒ 피난유도팀 (2명)
	초기대응체계	☐ 편성인원 : 6명, ☒ A조(2명) ☒ B조(2명) ☒ C조(2명)
운영시간		☒ 주간편성(08~18시) ☒ 야간편성(18~08시) ☒ 휴일(공휴일)

② 대원편성 및 임무현황

구 분	소 속	성 명	개별임무	비상연락체계	
				사무실	개인
대 장	입주자대표	이대표	총괄지휘	1223-1234	010-000-0000
부대장	소방안전관리자	홍길동	현장지휘		
101동담당자	동대표	최나라	현장지휘		
비상연락	시설팀	김경리 이안전	통보연락 수신반제어		
초기소화	시설팀 관리실	김전기 홍경비	초기소화1 초기소화2		
피난유도	관리실	정경비 김소방	피난유도1 피난유도2		
초기대응체계	구 분	A조(야간)	B조(야간)	C조(휴일)	D()
		(18~01시)	(01~08시)	(08~18시)	(__~__시)
	조 장	김보조자	이보조자	조보조자	
	조 원	경비1	경비2	경비3	

* 비고. 최종 업데이트 날짜 : 0000년 00월 00일 / 작성자 : 홍길동

※ 대상별 가용인력 등 현장여건에 따라 확대 운영 가능(TYPE- I ⇒TYPE-II)

① TYPE-Ⅱ (2급* 또는 1급**)

*2급(상시근무인원 50명 이상), **1급(전체대상)

편 성	자위소방대	☐ 편성인원 : 대장 1 명, 부대장 1 명, 대원 12 명
		☐ 조직구성 ☒ 지휘통제팀 (2명) ☒ 비상연락팀 (2명) ☒ 초기소화팀 (2명) ☒ 피난유도팀 (2명) ☒ 응급구조팀 (2명) ☒ 방호안전팀 (2명)
	초기대응체계	☐ 편성인원 : 6명, ☒ A조(2명) ☒ B조(2명) ☒ C조(2명)
운영시간		☒ 주간편성(08~18시) ☒ 야간편성(18~08시) ☒ 휴일(공휴일)

② 대원편성 및 임무현황

구 분		소 속	성 명	개별임무	비상연락체계						
					사무실	개인					
대 장		입주자대표	이대표	총괄지휘	1234-1234	010-0000-0000					
부대장		소방안전관리자	홍길동	현장지휘							
지휘	지휘	시설팀	이안전1	수신반제어							
	통제	시설팀	이안전2	자동설비제어							
현 장 대 응	비상 연락	관리팀	김경리1	대피방송							
		관리팀	김경리2	통보연락							
	초기 소화	시설팀	김전기1	초기소화1							
		시설팀	김전기2	초기소화2							
	피난 유도	관리팀	김경비1	피난유도1							
		관리팀	김경비2	피난유도2							
	응급 구조	시설팀	이소방1	응급처치1							
		시설팀	이소방2	응급처치2							
	방호 안전	관리팀	김경비3	방호안전1							
		관리팀	김경비4	방호안전2							
초기대응체계		구 분	A조(야간)		B조(야간)		C조(휴일)		D()		
			(18~01시)		(01~08시)		(08~18시)		(_ ~ _ 시)		
		조 장		김보조자		이보조자		조보조자			
		조 원		경비1		경비2		경비3			

* 비고. 최종 업데이트 날짜 : 0000년 00월 00일 / 작성자 : 홍길동

※ 대상별 가용인력 등 현장여건에 따라 확대 운영 가능(TYPE-Ⅱ⇒TYPE-Ⅲ)

1 TYPE-Ⅲ (특급)

편 성	자위소방대	☐ 편성인원 : 대장 1 명, 부대장 2 명, 대원 19 명 ☐ 조직구성 ☒ 지휘통제팀 (3명) ☒ 비상연락팀 (4명) ☒ 초기소화팀 (4명) ☒ 피난유도팀 (4명) ☒ 응급구조팀 (2명) ☒ 방호안전팀 (2명)
	초기대응체계	☐ 편성인원 : 6명, ☒ A조(2명) ☒ B조(2명) ☒ C조(2명)
운영시간		☒ 주간편성(08~18시) ☒ 야간편성(18~08시) ☒ 휴일(공휴일)

2 대원편성 및 임무현황

구 분		소 속	성 명	개별임무	비상연락체계	
					사무실	개인
대 장		입주자대표	이대표	총괄지휘	1234-1234	010-0000-0000
부대장		소방안전관리자 시설팀장	홍길동 홍안전	현장지휘		
지 휘	지휘 통제	종합방재실	이안전1	업무총괄		
		종합방재실	이안전2	수신반제어		
		종합방재실	이안전3	자동설비제어		
본 부 대	비상 연락	시설팀	홍통보1	대비방송		
		관리팀	홍통보2	화재전파		
	초기 소화	시설팀	홍소화1	초기소화1		
		관리팀	홍소화2	초기소화2		
	피난 유도	시설팀	홍피난1	피난유도1		
		관리팀	홍피난2	피난유도2		
	응급 구조	시설팀	홍응급1	응급구조1		
		관리팀	홍응급2	응급구조2		
	방호 안전	시설팀	홍방호1	설비제어(가스)		
		관리팀	홍방호2	비상반출		

지 구 대 (휘트니 센터)	비상 연락	헬스장	홍지구1	비상연락1		
		골프연습장	홍지구2	비상연락2		
	초기 소화	헬스장	홍지구3	초기소화1		
		커뮤니티센터	홍지구4	초기소화2		
	피난 유도	커뮤니티센터	홍지구5	피난유도1		
		독서실	홍지구6	피난유도2		
지 구 대 #	비상 연락					
	초기 소화					
	피난 유도					
지 구 대 #	비상 연락					
	초기 소화					
	피난 유도					
초기대응체계		구 분	A조(야간) (18~01시)	B조(야간) (01~08시)	C조(휴일) (08~18시)	D() (_ ~ _ 시)
		조 장	김보조자	이보조자	조보조자	
		조 원	경비1	경비2	경비3	

* 비고. 최종 업데이트 날짜 : 0000년 00월 00일 / 작성자 : 홍길동

붙임 3

소방교육훈련 및 평가계획 · 결과

[2021년 제1차] 교육훈련 및 평가계획

구	분	주 요 내 용			
명	칭	2021년 비상대응 훈련			
일 자 / 장 소		일자 : 2021년 6월 5일 / 장소 : 회의실			
종	류	대상	☒ 자위소방대 ☒ 재실자, 거주자		
		이론	☒ 강의식 ☐ 세미나		
		훈련	☒ 자체훈련 ☐ 합동훈련		
주 관 부 서		시설팀(담당자: 홍길동)			
참 여 대 상		입주자 및 관리사무소 직원			
참 여 기 관		00소방서(교육·훈련에 참여한 경우)			
시 나 리 오		701동 3층 화재			
교 보 재		교육자료(PPT handout), A/V, 소화기 실습모형			
교 육 계 획		■ 화재 시 비상연락 및 통보방법 ■ 화재 유형별 소화원리 ■ 화재 시 대피요령 및 재집결지 안내			
훈 련 계 획		■ 화재 시 화재신고 및 비상연락 ■ 초기소화 및 방호안전 조치 ■ 피난 및 재집결			
평 가 계 획	평가일시	2021년 6월 5일		평가자	이소장 (서명)
	평가방법	자체 체크리스트 활용			

비고. 교육운영(회의실), 훈련은 화재시나리오에 따라 진행

[재실자·거주자 대상]

소방훈련·교육실시결과 기록부

작성연월일 : 2021. 6. 5.

소방대상물	상호(명칭)	AB공동주택	등급	2급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170 (전화 :1234-1234)		
	구조	지하 1층/지상 15층/6개동, 연면적 12,345 m ² , 바닥면적 1,234m ²		
관 계 인	성명 (기관또는법 인명)	이대표(서명 또는 인)		
	주소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170		
소방안전 관리자	성명	홍길동	선임일자	2020.01.01
	직위	과장	자격구분	2급 소방안전관리자

훈련·교육결과

일시·장소	일시 : 2021. 6. 5 13~15시 / 장소 : 회의실 및 야외		
훈련·교육구분	☒ 자체훈련 ☐ 합동훈련	교육구분	☒ 자체교육 ☐ 그 밖의 교육
훈련통제관	이소장 (서명 또는 인)	교육교관	홍길동 (서명 또는 인)
훈련교관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참석인원	100명		
주요내용	· 화재 시 비상연락 및 통보방법,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사용방법 등 · 화재 시 대피요령 · 소방대원과 합동 진화훈련, 부상자 응급처치 등		
미비점	· 대피 훈련 시 다소 혼선 방생으로 정확한 대피 유도 미흡		
개선사항	· 차기 교육·훈련 추진 시 피난대피 중심 프로그램 마련 · 대피 시 코와 입을 수건, 물 비치		

* 작성요령

·훈련통제관 : 소방기관과의 합동훈련시 소방대원의 지휘관을 기재합니다.

[자위소방대 대상]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훈련 실시결과 기록부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작성일시 : 2021. 6. 5

작성자 : 홍길동

소방대상물	상호(명칭)	AB공동주택		등 급	[] 특급 [] 1급 [x] 2급 [] 3급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170 (연락처 :1234-1234)				
	소방안전관리자	성 명	홍길동		선임일자	2020.01.01
자격구분		2급소방안전관리자		연락처	010-000-0000	
자위소방대	조직구성	[x]비상연락 [x]초기소화 [x]피난유도 [x]방호안전 [x]응급구조 [x]지휘·통제 []기타()				
	인력현황	□대장(이대표) □부대장(홍길동) □인원(12명)				
초기대응체계	조직구성	[x]비상연락 [x]초기소화 []피난유도 []기타()				
	인력현황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x] 근무자 □ 인원 (2명)				

교육·훈련결과

일시·장소	2021.6.5.
참석인원	18명 (성별: 남 14명, 여 2명)
주요내용	· 화재시 비상연락 및 통보방법 · 화재유형별 소화원리 · 화재시 대피요령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점검결과

미비점	-
개선사항	· 실제화재, 연기 등 현장감 제고를 위한 교육 필요

[첨부1] 참석자 명단

No.	소 속	교육 . 훈련사항	확인(서명)
1	시설팀	비상연락	김경리
2	시설팀	초기소화	김전기
3	시설팀	피난유도	김경비

[첨부2] 교육 . 훈련 활동사진



붙임 4

비상연락 체계

□ 비상연락체계

구 분	대응방법 및 절차
화재경보	화재경보방식(□일제경보, ☒우선경보)에 따라 화재경보 ☐ 일제경보방식 : 전층[___ ~ ___층] 화재경보 ☒ 우선경보방식 : 발화층+직상층(1층)+지하층 화재경보
상황전파	화재상황 전파 시 다음 방법에 따라 상황전파 ☐ 육성 ☒ 경종 ☒ 비상방송(자동/수동) ☐ 시각경보기 ☒ 자위소방대 비상소집(비상방송 및 비상연락망) ☎ 종합방재실(수신반) : 1234-1234 / 기타 : 010-0000-1234
화재신고	최초발견자 또는 비상연락팀에서 119로 신고

비고. 종합방재실(수신반) : 1234-1234 / 근무시간 : 24시간(상기근무)

□ 비상연락망

구 분	유 선	무 선	기 능
00소방서	2100-0001	010-777-7771	화재진압,구조
00병원	2100-0002	010-777-7772	응급대응기관
가스안전공사	2100-0004	010-777-7774	가스시설관리
전기안전공사	2100-0005	010-777-7775	전기시설관리
한국전력	2100-0006	010-777-7776	전력관리
현대승강기	2100-0007	010-777-7777	EV관리

비고. 최종 업데이트 날짜 : 년 월 일 / 담당자 : 홍길동

붙임 5

초기대응 장비 및 절차

□ 초기대응장비

구 분	종류(형식)	위치(수량)	비 고
초기 소화	ABC 분말소화기	각 층별/법정대수	일반화재 적응
	CO2소화기	B1 전기실/2개	전기화재 적응
	CO2소화설비	B1 발전기실/1식	출입구 수동기동장치
응급 구조	옥내소화전	각 층별/법정대수	2인 1조 사용
	비상구급함	1층 관리실/1개	출혈, 화상, 골절치료
	자동제세동기(AED)	1층 관리실 로비/1개	심정지 환자소생

비고.

□ 초기대응절차

구분	대응조치	대응절차
초기 소화	☒ 초기소화(소화기, 소화전) ☒ 소화설비 기동	■ 초기소화팀 현장 출동 및 대응 ■ 화재 현장에서 초기소화 ■ 필요 시 자동식 소화장치를 수동기동하여 화재진압
응급 구조	☒ 출혈 ☒ 화상 ☒ 골절 ☒ CPR(심폐소생술) ☒ AED(자동제세동기)	■ 응급구조팀 현장 출동 및 대응 ■ 응급환자 발생 시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조치
방호 안전	☒ 화세차단(방화문/셔터 폐쇄) ☒ 위험물질 공급차단(가스, 전기) ☐ 중요물품 비상반출	■ 방호안전팀 현장 출동 및 대응 ■ 화재구역 화세차단 및 가스공급 차단밸브(1F) 수동폐쇄 조치

비고. 가스 긴급차단밸브 위치 : B1층 000

□ 지하층 차량화재 진압계획 (지하주차장이 설치된 대상에 한함)

구 분	대응방법 등
화재진압계획	■ 화재위치 파악(수신기등) ■ 화재경보 및 방송설비 작동 확인 ■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을 이용하여 화재진압 ■ 소화진압 불가 시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이동

소방시설 설치현황				
층별	구역	소방시설		설치위치
		종류	개소	
지하2층	A구역	분말3.3kg	5	기둥번호(3,6,9,12,18)
		소화전	2	기둥번호(8, 16)
	B구역	분말3.3kg	6	기둥번호(21,24,27,30,35, 40)
		소화전	3	기둥번호(24, 32, 36)

비고. 추가 장비 비치 현황

- 방연마스크 : 위치 / 개
- 공기호흡기 : 위치 관리사무소 / 개
- 기타() : 위치 / 개

붙임 6

피난계획 및 방법 ※ 부록-4 참조

구 분	피난계획 및 방법					
화재경보	☐ 경종(☐ 전층 ☒ 부분층) ☒ 비상방송설비 ☐ 기타()					
피난인원	☐ 상시거주인원 (370명)					
	동(구역별)	피난인원	동(구역별)	피난인원		
	701동	78명	704동	79명		
	702동	70명	705동	33명		
	703동	73명	706동	37명		
	☒ 재해약자 현황(해당사항에 ☒ 표시, 동/호/명)					
	재 해 약 자	☒ 노인	701동/1401호/1명			
		☒ 영유아	702동/101호,203호,503/3명			
		☒ 어린이	704동/201호,504,1001호/3명			
		☒ 임산부	705동/101호/1명			
☒ 장애유형		☒ 이동 704동501호	☐ 시각	☐ 청각	☐ 언어	
* 노인[65세 ↑], 영유아[6세 ↓], 어린이(13세 ↓), 임산부 및 장애인						
피난계획	☒ 계단(피난층또는옥상광장) ☐ 경량칸막이 ☒ 하향식피난사다리					
	☐ 피난안전구역 ☐ 대피공간 ☐ 인증 대체시설					
	구분	피난경로		피난방법		
	일반	1안)	층⇒피난층	해당층에서 계단을 통해 피난층으로 이동		
		2안)	층⇒아래층	하향식피난사다리를 이용하여 아래층으로 이동		
	재해 약자	노약자	층⇒피난층 (옥상광장)	피난보조자의 보조를 받으며 피난층 (옥상광장)으로 이동		
이동 장애		층⇒피난층	휠체어로 계단까지 이동 후 피난보조자 2인이 부축하여 피난층으로 이동			
집결지	놀이터-1 (701~703동), 놀이터-2 (704~706동)					
대피공간 유지관리계획	☒ 안내방송 ☒ 입주민 홍보 ☐ 방문확인					

□ 옥상광장 대피 계획 (옥상광장이 설치된 대상에 한함)

구 분	현 황
옥상광장	☒ 유 ☐ 무
출입통제	☒ 상시개방 ☐ 화재시 개방
자동개폐장치설치	☐ 유 ☒ 무
안내표지(옥상대피로)	☒ 유 ☐ 무

옥상광장 대피 계획			
동별	위치개소	층(높이)	피난방법
701 ~704	1,2라인(1개소) 3,4라인(1개소)	15층 상부(45m)	층 계단실→PH층까지 이동→옥상대피로(표지확인) 피난→ 외부 옥상광장 대기(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린다)
705 ~706	1,2라인(1개소)	10층 상부(30m)	

※ 피난층 대피가 불가 할 경우 신속히 옥상대피로(옥상광장)로 피난

붙임 7

피해복구계획 및 지원

☐ 피해복구 계획

구 분		주 요 내 용	
단 복	기 구	화재원인 및 피해현황 조사	시설 정비 및 보수절차
		화재현장 복구(Clean-Up)	임시 숙소 및 영업장 마련
장 복	기 구	의료 및 심리치료 지원	기반시설 복원 및 안전진단
		법률 상담 및 재정 지원	화재보험처리 및 피해보상
비고.			

☐ 피해복구 지원

화재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기관, 지원내용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구 분	지원내용	연락처
관할(00)소방서	피해지원(화재증명원 발급)	2100-0001
대한적십자사(00지사)	생필품 지원(긴급생계대책)	2100-0002
화재보험(00화재)	화재보험금 지급	2100-0003
세제지원(세무서/세무과)	국세, 지방세 지원	2100-0004
전기안전공사(00지사)	전기시설 안전점검	2100-0005
가스안전공사(00지사)	가스설비 응급복구	2100-0006

비고.

붙임 8

화기취급작업 신청·허가 ※부록-2 참조

① 화기취급 신청서

작업 개요	작업명칭	청수배관 보수 작업
	작업기간	2021년 2월 5일, 10시 ~ 15시(5시간)
	작업장소	지하1층 기계실
	작업 책임자	00설비 정대표 (☎ 1234-432)
작업 계획	작업종류	용접 및 용단작업
	작업절차	① 배관 내 청수 배수 ② 노수배관 부위 분리 ③ 배관 절단 및 용접 ④ 배관 결합
	작업인원	2명(이설비, 김배관)
	사용장비	전기용접기, 절단기 등
	보충작업 필요여부	☐ 밀폐공간출입 ☐ 정전작업 ☐ 굴착작업 ☐ 방사선 사용 ☐ 고소작업 ☐ 중장비 작업
	첨 부	작업자 명단, 장비목록, 도면 등

귀사의 화기취급작업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화재감시인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할 것을 약속하며 위와 같이 화기취급작업을 신청합니다.

2021년 2월 1일

작업 책임자 : 00설비 정대표 (서 명)

② 화기취급 허가서

허가 개요	작업명칭	청수배관 보수 작업
	허가기간	2021년 2월 5 일, 10시 ~ 15시(5 시간)
	허가장소	지하1층 기계실
	작업개요	전기용접기, 절단기 등
	보충작업 필요여부	☐ 밀폐공간출입 ☐ 정전작업 ☐ 굴착작업 ☐ 방사선 사용 ☐ 고소작업 ☐ 중장비 작업
안전 요구 사항	■ 작업 시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사항을 [M] 표시	
	① 화재예방조치	② 안전교육
	☒ 가연물 이동 및 보호조치 ☒ 소화설비(소화, 경보)작동 확인 ☒ 용접·용단 장비/보호구 점검	☒ 화재안전교육(작업수칙) ☒ 비상 시 행동요령 ☒ 소방시설 사용 교육·훈련
	③ 화재감시인 입회 및 감독	④ 기타
	☒ 화재감시인 지정 및 입회 ☒ 개인보호장구 착용 ☒ 소화기 및 비상통신장비 비치	☒ 작업구역설정(출입통제) ☒ 작업구역 통풍 및 환기 ☒ 작업 사전공지(게시, 통보, 방송)
	■ 기타 요구사항	
	안전한 작업수행에 필요한 특별 요구사항을 직접 기입	
확인	안전조치 확인	작업완료
	■ 확인일자 : 2월 4일 ■ 확 인 자 : 이안전 (서명)	■ 완 료 시 간 : 18시 ■ 화재감시인 : 홍길동 (서명)

위와 같이 화기취급작업을 허가합니다.

2021년 2월 4일

소방안전관리자 : 홍 길 동 (서 명)

□ 지하(공용)구역



< 피난안내도 코팅 부착 >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대상명 : AB공동주택)	
이 건물의 소방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 홍길동	(선임일자 : 2020 년 1 월 3 일)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 2 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에 따라 이 표지를 붙입니다.	
연락처 : 1234-1234	

※ 이 현황표의 규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크기, 재질, 글씨체를 조정할 수 있다.

가. 크기: A3 용지(가로 420밀리미터 × 세로 297밀리미터)

나. 재질: 아트지(스티커) 또는 종이

다. 글씨체

1)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나눔고딕Extra Bold 46포인트(흰색)

2) 대상명: 나눔고딕Extra Bold 35포인트(흰색)

3) 본문 제목 및 내용: 나눔바른고딕 30포인트(검정색)

4) 하단내용: 나눔바른고딕 24포인트(검정색)

5) 연락처: 나눔고딕Extra Bold 30포인트(흰색)

라. 바탕색: 남색(RGB: 28,61,98), 회색(RGB: 242,242,242)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9호의3서식]

붙임 11
공동주택 하자보수 관리 대장 ※소방시설에 한함

대상명	000 공동주택 신축공사		발주처	00 건설	
착공일자	2016년 11월 8일		준공일자	2020년 1월 19일	
하자담보 책임기간	건축	2020년 1월 20일부터	2025년 1월 19일까지	(5)년간	
	전기	2020년 1월 20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	(3)년간	
	소방	2020년 1월 20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	(3)년간	
	통신	2020년 1월 20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	(3)년간	
하 자 보 수 현 황					
일 자	내 용		조 치 결 과		처 리 일
2021.3.8	옥내소화전 배관 누수		누수배관 교체		2021.4.5

비고.

소방시설 오동작 관리대장 ※소방시설에 한함

[illegible]

* 비교.

부 록

1. 소방계획서 작성 안내
2. 화기취급작업 절차
3.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절차
4. 피난계획 수립 절차
5. 비상 시 대처방법(스프링클러 헤드 개방, 비화재보)
6. 안전한 공동주택 생활을 위한 화재예방 안내문 등

[부록 1.]

소방계획서 작성안내

1. 서식 작성

이 서식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소방계획 작성서식(Template)으로 제공 되었다.

2. 작성 요령

작성자는 소방계획의 주요목차, 내용 및 부록에 기초하여 소방계획을 작성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다. 본 서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일반계획의 [굵게 표시된 부분] 및 부록의 공란의 내용을 대상물의 특성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서식은 대상처의 안전관리 특성 및 운영 환경에 따라 일반계획의 조문내용 및 붙임(서식 및 절차서)을 선택적으로 적용 될 수 있으며, 다양한 문서형태(종이, 전자문서, DB 등) 및 형식(DOCX,PPTX,PDF)으로 작성·관리될 수 있다.

3. 작성체계

구 분	구성 체계	
일 반 계 획	장	제1장 일반사항
	절	1.0 조문명(TAP, 파란색)
		1.1 조문내용(TAP, 검은색) [비고 : 관련서식 / 첨부내용]

【참고1】 기본구조

일반계획			서식
구분	단 계	주요내용	
일반사항	표 지 부	0.1 표지 0.2 목차 0.3 개정이력 0.4 작성안내(작성체계)	붙임1 소방대상물 현황표 붙임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운영
	내 용 부	1. 목적 2. 적용근거 3. 적용범위 4. 책임과 권한 5. 문서작성 및 기록유지	붙임3 소방교육훈련 및 평가 계획·결과 붙임4 비상연락 체계
관리계획	예방/완화	6. 일반현황 등의 작성 7. 자체점검 8. 업무대행 9. 일상적 안전관리 10. 화재예방 및 홍보 11. 화기취급감독	붙임5 초기대응장비 및 절차 붙임6 피난계획 및 방법
	대 비	12. 소방안전관리위원회 13. 자위소방대·초기대응체계 구성·운영 14. 교육훈련 및 자체평가	붙임7 피난복구계획 및 지원 붙임8 화기취급작업 신청·허가 붙임9 피난안내도 작성
대응계획	대 응	15. 비상연락 16. 초기대응 17. 피난유도	붙임10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붙임11 공동주택 하자보수 관리부
	복 구	18. 화재피해 복구	부 록

[참고2] 작성조문 대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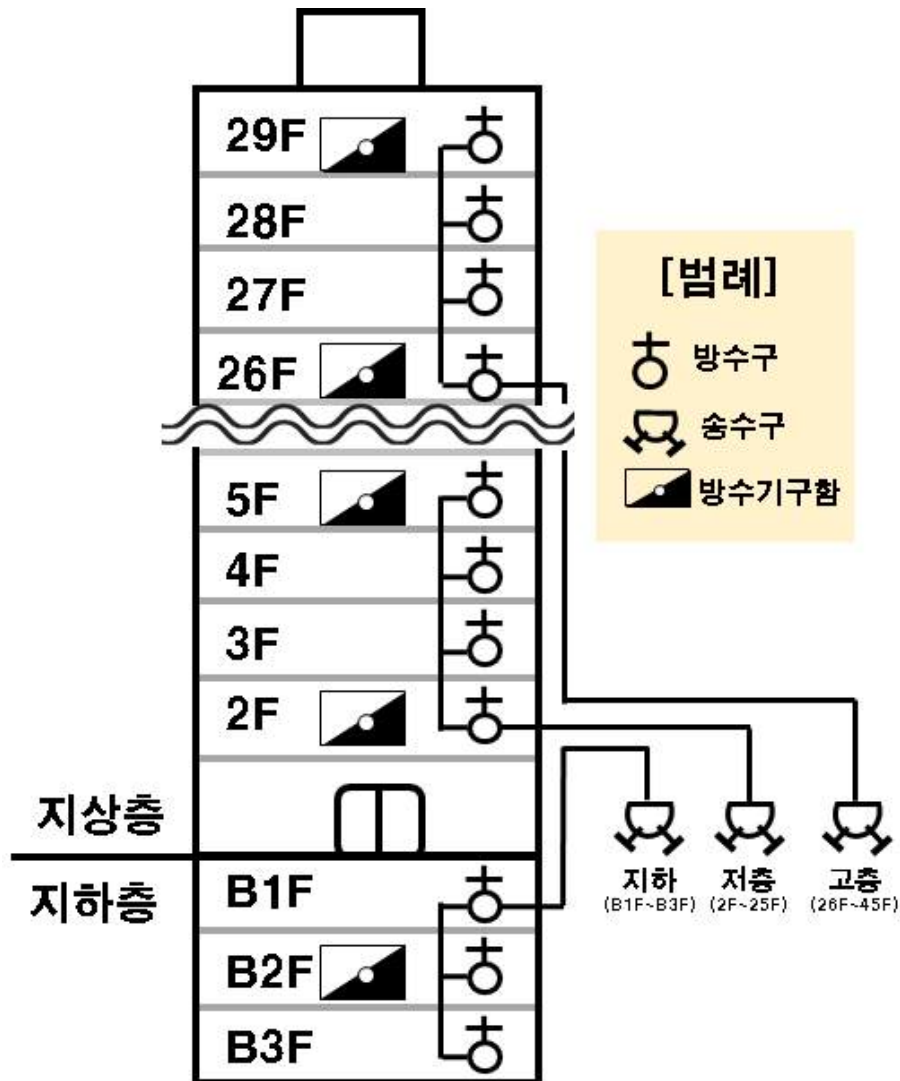
소방계획서(시행령 24조)	소방계획서	
	일반계획	붙임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일반현황	5.0	붙임1
2. 소방 및 방화시설 등 현황 (전기,가스,위험물시설 포함)	5.0	붙임1
3. 자체점검계획 및 화재진압대책	6.0, 15.0	붙임5
4. 소방/피난.방화시설 점검.정비계획	8.0	-
5. 피난계획(재해약자 피난대책 포함)	16.0	붙임6
6. 방화구획, 제연구획, 마감재료 방염물품, 방화구조/설비 관리계획	8.0	붙임1
7. 소방교육 및 훈련 계획	13.0	붙임3
8. 자위소방조직 구성 및 임무부여 (재해약자 피난보조 임무 포함)	12.0	붙임2
9. 공사장 소방안전관리 사항	8.0, 10.0	붙임8
10. 공동/분임 소방안전관리	11.0	-
11. 소화 및 연소방지 관련사항	10.0, 15.0	붙임8
12. 위험물 저장/취급 사항	5.0	붙임1
13. 기타 사항	-	-

[참고3] 관련 용어 해설

구분	해설	비고(근거)
1. 소방시설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소방시설법 제2조
2. 피난시설	복도, 계단, 출입구 등	건축법 제49조
3. 방화구획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4. 제연구획	제연설비 설치장소 중 제연구역으로 구획하는 것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
5. 내부 마감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4조
6. 방염물품	방염성능검사물품으로 종류로는 카페트, 커튼, 블라인드, 암막, 무대막, 벽지류, 합판, 목재, 섬유판, 합성수지판, 합성수지 시트, 소파·의자, 기타물품 등이 있다	소방청 고시 방염성능기준 제2조, 제3조
7. 방화구조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	건축법 시행령 제2조
8. 방화시설	건축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	소방시설법 제10조
9. 위험물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10. 특수가연물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면화류·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방기본법 제15조

[참고4] 연결송수관설비 입면도

연결송수관 송수구역 (예시)



【000동】

구분	연결송수관설비 현황		
송수구역	지하 (B1F~B3F)	저층 (2F~25F)	고층 (26F~45F)
방수구	겸용 (옥내소화전)	겸용 (옥내소화전)	겸용 (옥내소화전)
방수기구함	B2F	2F,5F,8F,11F,14F, 17F,20F,23F	26F,29F,32F,35F, 38F,41F,44F

[부록 2.]

화기취급작업 절차		
구 분	처리절차	업무내용
사전허가	작업허가	❶ 작업요청
		❷ 승인검토 및 허가서 발급
안전조치	화재예방조치	❶ 가연물 이동 및 보호조치
		❷ 소방시설 작동 확인
		❸ 용접·용단장비·보호구 점검
	안전교육	❹ 화재안전교육
		❺ 비상 시 행동요령 교육
작업 및 감독	화재감시인 입회 및 감독	❶ 화재감시인 입회
		❷ 화기취급감독
	최종 작업 확인	❸ 현장상주 및 화재감시
		❹ 작업 종료 확인

* 화재감시인은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 또는 안전관리자가 지정한 인력으로 운영

화기취급작업전 안전조치등

구 분	주요내용
가연물 이동	■ 작업현장(반경 11m 이내)의 가연물 이동(제거) * 벽, 파티션, 천장의 반대편에 있는 가연물 이동(제거) ■ 작업현장(반경 11m 이내)의 바닥을 깨끗이 청소 ■ 가연성, 인화성물질을 보관하던 배관, 용기, 드럼에 대해 위험물질을 방출하고 폭발 및 화재위험성을 미리 확인 ■ 벽, 파티션, 천장 지붕에 가연성 덮개나 단열재가 없을 것
가연물 보호	작업현장(반경 11m 이내) 가연물의 이동(제거) 등이 어려울 경우 조치 ■ 작업현장(반경 11m 이내)의 가연물에 차단막 등 설치 ■ 개구부(벽, 바닥, 덕트)에 대해 불연성 물질로 폐쇄 ■ 가연성 바닥재(종이, 나무, 섬유)의 경우 보호조치 ■ 덕트 및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불티가 비산·점화 가능 시 작동을 정지하거나 적절한 보호조치(차단막 설치 등)
화 기 취 급 수 칙	■ 작업허가서에 따른 허가장소, 시간 및 장비를 사용 ■ 용접·용단 장비를 사전에 점검하고 개인보호장구 착용 ■ 불티가 가연물로 비산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 ■ 작업현장의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 작업 중단 ■ 화재감시인의 지시에 따라 작업수행 및 안전수칙 준수 ■ 작업현장 내 금연 및 음주 금지(위반 시 작업허가 취소)
화재 시 행동요령	■ 화재발생 시 소화기, 옥내소화전으로 초기 소화 ■ 초기소화 실패 시 화재신고(방재실 보고 포함) 및 경보설비 작동 ■ 발화원(용접·용단 작업에 사용되는 가스용기 등) 제거 ■ 화재확산 시 작업자 및 인근 재실자(거주자) 피난유도

화기취급작업현장 안전수칙

순 번	안전수칙
①	모든 작업은 화재감시인 입회 및 감독 하에 작업
②	작업현장(반경 11m 이내)의 모든 가연물 을 이동
③	가연물 이동 불가 시 적절한 보호조치 (차단막 등 설치)
④	작업장 내부·바닥을 깨끗이 청소 하고 정리정돈 유지
⑤	화기취급작업 시 반드시 개인보호장구 착용
⑥	화기취급 시 불티 가 가연물 로 비산 되지 않도록 주의
⑦	작업현장의 화재 위험성이 높은 경우, 즉시 작업 중단
⑧	화재발생 시 초기소화 (소화기) 및 경보설비 (비상벨) 작동
⑨	작업장 내 절대 금연 (라이터 반입금지) 및 음주행위 금지
⑩	기타 사항은 화재감시인 의 지시 에 따라 작업
비상연락처 : 화재신고 119, 방재실 : 1234-1234	

화기감시인 감독수칙

구 분	주요내용
사전 확인	■ 화기취급작업 사전 허가서 발급 여부 ■ 작업허가서의 안전조치 요구사항 이행 여부 ■ 작업지점(반경 11m 이내) 가연물의 이동(제거) ■ 이동(제거)가 불가능한 가연물의 경우 차단막 등 설치 확인 ■ 소방시설 정상 작동 및 소화기 비치(2대 이상) ■ 비상연락체계 확인(방재실, 현장 작업책임자 등) ■ 용접·용단장비 및 개인보호구 상태 점검 ■ 작업현장의 출입제한구역 설정 및 차량 통제 등(필요 시) ■ 작업계획을 사전에 공지(통보, 방송 등) ■ 작업허가서 및 안전수칙 현장 게시
현장 감독	■ 통신장비(무전기, 휴대전화) 및 소화기를 갖추고 감독 ■ 화기취급작업 현장에 상주하며 다른 업무 수행 금지 ■ 용접·용단 작업에 사용되는 장비의 안전한 사용여부 확인 ■ 화기취급작업 시 불티의 비산 및 가연물 착화 여부 확인 ■ 작업현장 내 라이터 사용 및 흡연 여부 감독 ■ 작업 시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작업을 즉시 중단 ■ 기타 작업허가서의 허가내역 및 안전요구사항 준수 확인
최종 확인	■ 작업종료 후 30분까지 화기취급작업 현장에 상주 * CCTV 등으로 현장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인정 ■ 작업종료 후 3시간까지 화재발생 여부 감시(모니터링) ■ 화재감시 상태 종료 후 작업허가서에 최종 확인(서명)

[부록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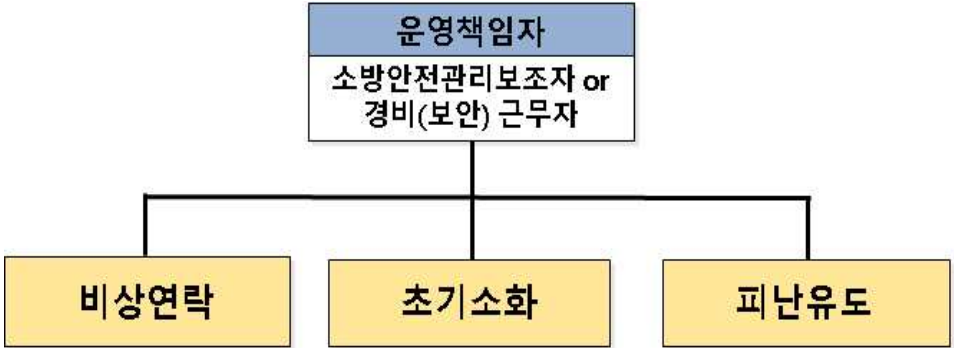
자위소방대 구성	
구분	업무특성
대장	자위소방대 총괄·지휘·운용
부대장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수행 불가능시 임무 대행
지휘통제팀	다른 팀의 임무 조정, 화재진압 등에 관한 훈련계획 수립·시행
비상연락팀	화재경보 및 소방서 신고
초기소화팀	화재진압
피난유도팀	입주자 등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 유도
응급구조팀	인명구조 및 부상자 응급처치
방호안전팀	화재확산방지 및 위험물질 이동

자위소방대 표준운영 절차

구분	운영절차
지휘통제팀	수신반을 거점으로 지휘통제반 소집 및 활동 개시
	자위소방대 개별 임무지시 및 활동상황 점검
	자위 소방활동에 필요한 추가인력 및 장비 등 지원
비상연락팀	발신기(수동조작/경종) 작동
	비상방송설비 작동 확인
	소방서 119 신고 등 화재상황 전파
초기소화팀	화재현장에 신속히 출동하여 화재를 조기에 진압
	구역별 소방시설을 이용하여 초기진화
피난유도팀	피난계획에 따라 양방향 피난개시
	안전구역으로 입주자 피난 유도(재해약자 피난보조포함)
응급구조팀	인명구조 및 부상자 응급처치 ※ 응급상황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조치(지혈, CPR등) 수행
방호안전팀	열/연기 확산방지 위해 방화문/셔터 폐쇄
	가연성 및 폭발성 물질 안전구역으로 이동조치

자위소방대 편성 기준

구분	적용대상 및 구성
TYPE- I	3급(전체) 또는 2급(상시근무인원 50명 미만)
TYPE- II	2급(상시근무인원 50명 이상) 또는 1급(연면적 3만㎡ 미만)
TYPE- III	1급(연면적 3만㎡ 이상) 또는 특급(전체)

초기대응체계 구성	
구분	주요내용
조직구성	화재발생시 즉시 가용 가능한 소규모 팀으로 편성 운영
	근무조별, 근무시간별(주간·야간·휴일) 로 세분화하여 조직
인력편성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경비(보안) 등 상시 근무자 중심으로 구성
	근무자의 근무위치, 근무인원 등을 고려하여 편성
	초기대응체계 편성 시 방재실(또는 수신반) 근무인력 1명 이상 배치
임무안내	운영책임자는 초기대응체계 개인 임무 및 임무완료 시 후송 행동절차 등 개인별 임무표 상세 작성 배부
	초기대응체계 구성원 공백(퇴사, 휴가 등) 시 즉시 초기대응체계 편성표 변경 운영
연락체계	휴일 및 야간 등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감시하는 경우 무인 경비회사와 비상연락체계 구축
초기대응 체계 구성도	 <pre> graph TD A["운영책임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or 경비(보안) 근무자"] --- B[비상연락] A --- C[초기소화] A --- D[피난유도] </pre>

[부록 4.]

피난계획 수립절차

피난전략수립	재해약자파악등	피난경로설정	피난유도	집결지
· 일제피난 · 재배치 · 방호조치	· 재해약자현황 · 피난보조전략수립 · 재해약자 피난계획수립	· 양방향피난 · 피난안전구역 · 옥상피난	· 사전준비 · 유도방법 · 패닉방지 · 피난유도시 주의사항 · 잔류자 확인	· 집결지 지정 · 집결지 식별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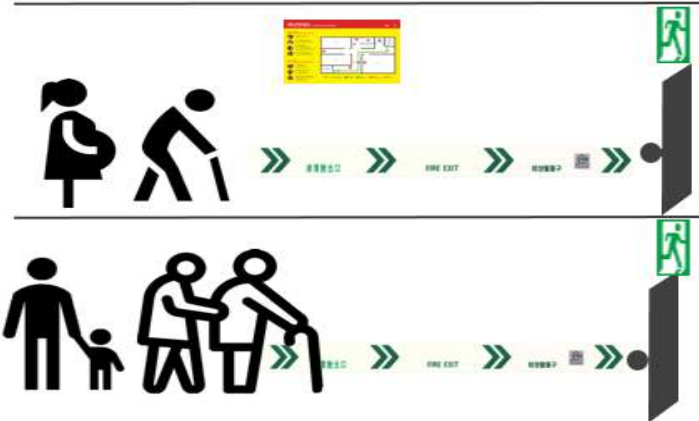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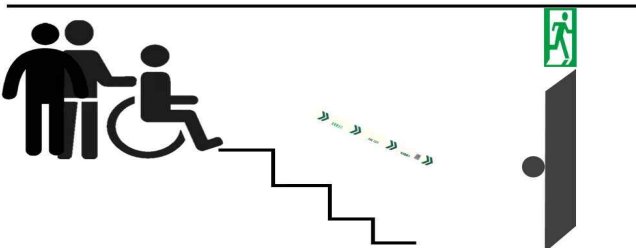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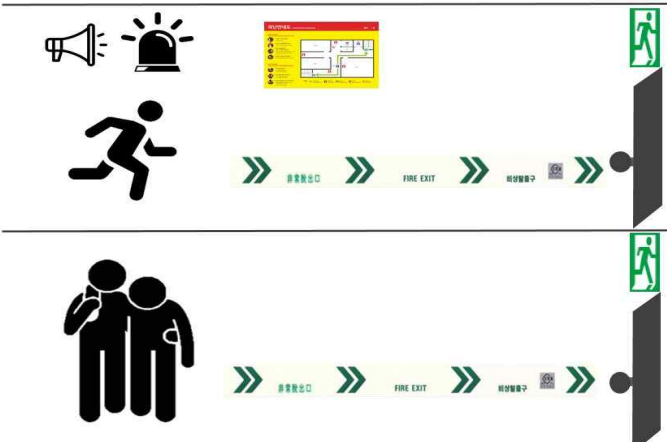
절 차	내 용																				
피 난 전략 수립	✓ 화재상황별 적합한 피난전략 수립 및 결정 (1) 일제피난(Total Evacuation) : 화재 발생 시 피난계단을 통해 피난 화재경보→피난계단→집결지(피난층) 피난 (2) 재배치(Relocation) : 일제피난이 곤란한 경우, 수평·수직적 재배치를 통해 화재발생구역으로부터 부분적 피난 실시 수평적(층↔층) or 수직적(하층)재배치를 통한 부분적 피난 실시 * 피난안전구역/대피지역 등 이동 후 구조대기 (3) 방호조치(Defend-in-Place) : 피난경로 폐쇄 및 다수의 재해약자 발생 시 현 위치에서 방호조치 및 구조대기 화염으로 인한 피난경로 폐쇄/고립 및 재해약자 * 현 위치 방호조치 후 구조대기/화재위험도(붕괴등)에 따라 피난 전환																				
	재해약자 파악 등	✓ 재해약자 유형 및 인원 파악 등 적합한 피난계획 사전 수립 및 훈련 (1) 재해약자 현황 파악 : 대상물 내 유형별 재해약자 현황 사전 조사 <table><tr><th rowspan="2">□고령자</th><th rowspan="2">□유아</th><th colspan="5">장애유형</th></tr><tr><th>□이동</th><th>□시각</th><th>□청각</th><th>□언어</th><th>□인지</th></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 노인[65 ↑], 영유아[6세 ↓], 어린이[13세 ↓]를 기준으로 재해약자 조사	□고령자	□유아	장애유형					□이동	□시각	□청각	□언어	□인지							
		□고령자			□유아	장애유형															
			□이동	□시각		□청각	□언어	□인지													

재해약자 파악등	(2) 피난보조 전략 수립 : 재해약자 유형별 피난절차 및 방법 결정 <table border="1" data-bbox="489 271 1374 616"> <thead> <tr> <th data-bbox="489 271 753 320">구 분</th><th data-bbox="753 271 1374 320">피난절차 및 방법</th></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89 320 753 421">자력피난 가능</td><td data-bbox="753 320 1374 421"> ■현장의 피난유도원이 신속히 피난을 유도 ■건물 외부로 피난 후 지정된 안전장소로 집결 </td></tr> <tr> <td data-bbox="489 421 753 616">자력피난 불가</td><td data-bbox="753 421 1374 616"> ■현장의 피난유도원 +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 피난 ■일시적 위험회피를 위해 수평→수직적 재배치 (안전구역으로 이동) 후 추가피난이나 구조요청 ■현 위치에서 방호조치 후 구조대기 </td></tr> </tbody> </table> (3) 재해약자 피난계획 수립 : 화재 시 재해약자에 대한 피난계획을 결정 하고 피난보조자를 지정	구 분	피난절차 및 방법	자력피난 가능	■현장의 피난유도원이 신속히 피난을 유도 ■건물 외부로 피난 후 지정된 안전장소로 집결	자력피난 불가	■현장의 피난유도원 +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 피난 ■일시적 위험회피를 위해 수평→수직적 재배치 (안전구역으로 이동) 후 추가피난이나 구조요청 ■현 위치에서 방호조치 후 구조대기
구 분	피난절차 및 방법						
자력피난 가능	■현장의 피난유도원이 신속히 피난을 유도 ■건물 외부로 피난 후 지정된 안전장소로 집결						
자력피난 불가	■현장의 피난유도원 +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 피난 ■일시적 위험회피를 위해 수평→수직적 재배치 (안전구역으로 이동) 후 추가피난이나 구조요청 ■현 위치에서 방호조치 후 구조대기						
피난경로 설정	✓ 화재 시 피난경로를 사전에 설정 및 피난훈련 실시 (1) 양방향 피난 설정 : 2개소 이상의 피난로 구성 및 설정 (2) 피난안전구역 : 피난안전구역 사전 안내 및 확인 (3) 옥상피난 : 옥상출입문 개방여부 및 자동개폐장치 설치여부 확인						
피난유도	✓ 화재 시 신속한 피난유도를 위한 전략적 피난방법 결정 (1) 사전준비 : 화재 진행 상황을 파악하여 피난자의 자력대피여부, 피난보조자 보조여부 및 기타 피난에 필요한 장치 등 구비 여부 파악 (2) 유도방법 : 화재 시 각 층, 구역별로 양방향 피난유도(제1, 제2 피난로)를 원칙으로 운영하되, 피난 시 병목 및 지체현상 발생 방지를 위해 분산 유도 구성 (3) 패닉방지 : 피난 유도 시 패닉현상 방지를 위한 조치 강구 (4) 피난유도 시 주의사항 : 대상물 용도 및 인원등에 따라 피난유도 시 주의사항 사전 조사 (5) 잔류자 확인 : 피난유도에 관련된 인력이 최종 피난 시 잔류자 확인 등 피난유도, 구조요청 및 방호조치 수립						
집결지	✓ 피난 시 집결 장소 사전 지정 및 식별 조치 (1) 집결지 지정 : 해당 대상물의 인근 안전지역으로 집결지 지정 (2) 집결지 식별 및 확인 : 집결장소 식별 조치 및 피난훈련을 통해 사전 집결장소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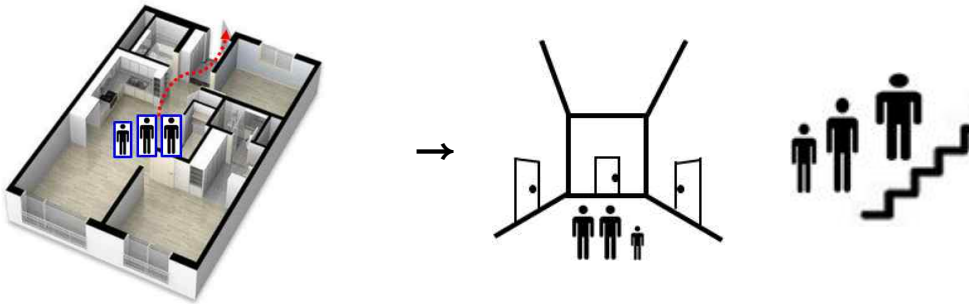
재해약자 유형별 지원계획

지원 대상		지 원	화재인식	피 난준비	피 난개시	피 난종료
노 인·임 산부			비상방송 (경종)	· 피난안내도 확인 · 피난보조자 배치 (대상별 1인 이상 배치)	· 자력대피(가능자) · 피난보조자 동반 이동 (피난층/옥상/피난안전구역)	집결지 이동
영유아·어린이			비상방송 (경종)	· 피난유도원 배치 · 피난보조자 배치 (영유아 2인 별 1인 이상 배치)	· 자력대피(피난유도원 안내) · 피난보조자 동반 이동 (피난층/옥상/피난안전구역)	
장애인	이동· 시각		비상방송 (경종)	· 피난보조자 배치 (대상별 2인 이상 배치)	· 피난보조자 동반 이동 (피난층/옥상/피난안전구역)	집결지 이동
	청각		피난보조자 배치	· 피난안내도 확인 · 피난보조자 배치 (대상별 1인 이상 배치)	· 자력대피(가능자) · 피난보조자 동반 이동 (피난층/옥상/피난안전구역)	
	언어		비상방송 (경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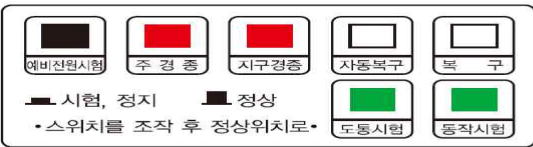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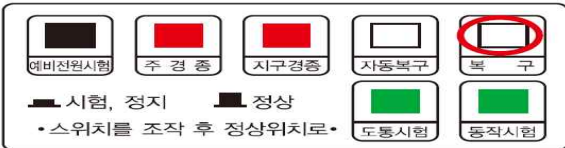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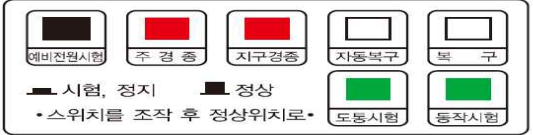
재해약자 유형별 대피요령

대상	관련내용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 자력으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 피난안내도 등 확인 후 피난층 이동 · 자력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 피난보조자(1인 이상)와 동반하여 피난층 이동 
이동· 시각	· 피난보조자 2인 이상 동반하여 피난보조기구를 활용하여 피난층 이동 
장애인	· 자력으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 화재발생 인지 후 자력으로 피난층 이동 · 자력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 피난보조자(1인 이상)와 동반하여 피난층 이동 

세대내 스프링클러 헤드가 개방된 경우 대처방법

단계	관련내용
상황 : 화재로 인한 스프링클러 헤드가 개방된 상황이 아닌 경우	
1단계	 ■ 전원차단(세대 분전함 내 주차단기 off 전환)
2단계	 ■ 세대에서 외부로 신속히 이동(복도, 계단 등)
3단계	 ■ 관리사무소 연락(펌프, 밸브 등 차단)

자동화재탐지설비 비화재보 발생 시 대처방법

단계	관련내용
상황 : 건축물에 경종과 사이렌이 울린다.	
【1단계】 수신기 확인	화재표시등, 지구표시등 확인 
【2단계】 실제화재 확인	- 해당구역으로 이동하여 실제화재여부를 확인 ※ 비화재보 상황
【3단계】 음향장치 정지	음향장치(주경종, 지구경종, 비상방송 등) 정지 
【4단계】 비화재보 원인 제거	- 감지기 동작표시등 확인→ 감지기 교체 등 - 발신기 동작표시등 확인→ 해당구역 발신기 누름버튼 복구
【5단계】 수신기 복구	복구버튼을 눌러 수신기 정상 복구 
【6단계】 음향장치 복구	음향장치(주경종, 지구경종, 비상방송 등) 정상 
【7단계】 스위치주의등 확인	스위치주의등 소등 확인 

[부록 6.]

안전한 공동주택 생활을 위한 화재예방 안내문

순번	관련내용
1	공동주택 단지 내 금연
2	화재 시 승강기 탑승금지
3	화재 시 계단을 통해 안전장소로 대피
4	에어컨 가동 시 실외기 실 환기창 개방
5	생활가전기기 전기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6	화기(촛불, 가스불 등) 사용 시 자리를 비우지 말것
7	겨울철 전기장판, 전기히터 사용 시 화재발생 주의
8	쓰레기 분리수거장 폐전지류 및 가스통 분리배출
9	정전 시(전원차단) 자동문 개방방법
10	소방차 전용구역 방해행위 금지
11	피난시설 내 장애물 설치금지
12	피난층 대피가 불가 할 경우 옥상으로 대피
13	화재시 출입문(방화문) 닫고 피난하기
14	피난시설 사용방법(하향식피난사다리 구조)
15	피난시설 사용방법(경량칸막이 구조)
16	피난시설 사용방법(대피공간 구조)
17	전입자를 위한 화재예방 안내문(경량칸막이 구조)
18	전입자를 위한 화재예방 안내문(대피공간 구조)
19	전입자를 위한 화재예방 안내문(하향식피난사다리 구조)

공동주택 화재예방



공동주택 단지 내 금연!

우리 모두를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는 금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의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



주민의 1/2 이상 신청 시 해당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안내표지**를 설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공동주택 지정안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주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며 공용구역에 해당하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금연아파트 흡연자 단속 : 위반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공동주택 화재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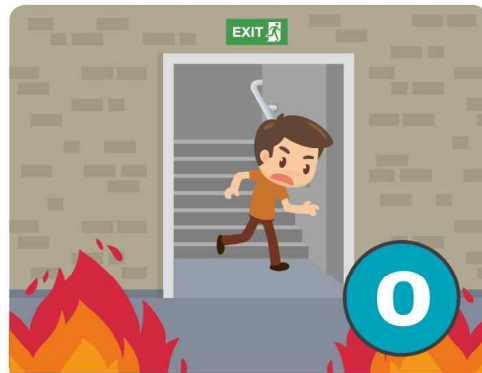


화재 시 승강기 탑승금지!

화재 시 엘리베이터(x) 말고 비상계단(o)을 이용하세요!



엘리베이터는 안돼요!



비상계단을 이용하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을 때에는 모든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내린 후 계단을 이용하여 피난 할 것



만일 감혔을 때에는 인터폰으로 구조를 요청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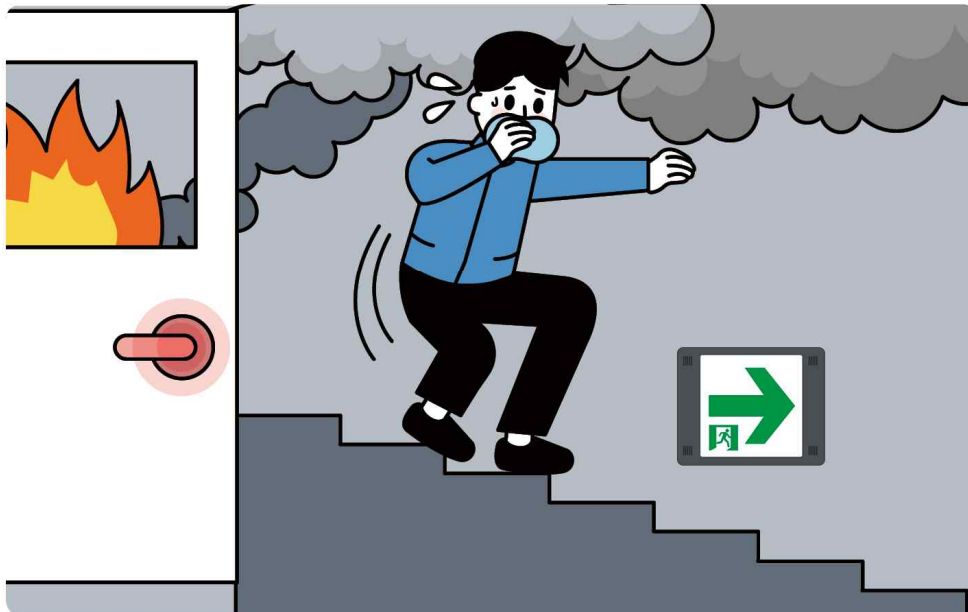
전원 차단으로 엘리베이터가 정지 될 수 있으며, 반드시 계단을 이용 할 것

공동주택 화재예방

화재 시 계단을 통해 안전한 장소로 대피!

화재 시 가장 안전한 피난수단은 계단임을 꼭 기억하세요!



계단 내 연기가 보이지 않는다면 **젖은 물수건**을 준비하여 신속히 **아래층**으로 **대피** 할 것(불가능 시 옥상 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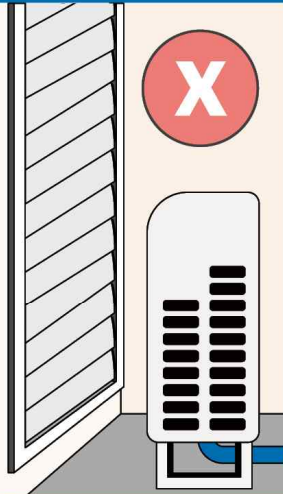
정전으로 인해 시야확보가 어렵다면 **손전등**이나 **휴대전화 불빛**을 사용할 것

공동주택 화재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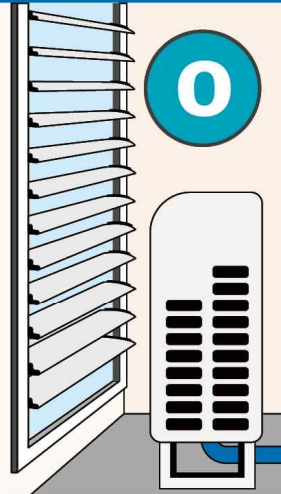


에어컨 가동 시 실외기 실
환기창 개방!

여름철 에어컨 화재 실외기가 주범! 안전점검 하세요!



에어컨 가동 시 닫아두지마세요!



환기창을 개방해주세요!



실외기는 열이 많아 주변에 물건을 두지 말 것



과부하 예방을 위하여 실외기에 주기적으로 휴식시간을 부여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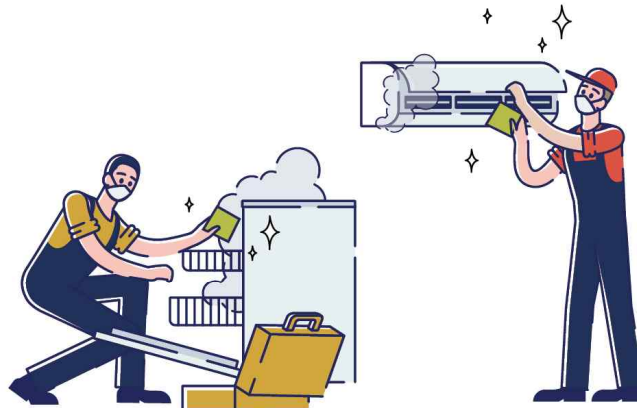
실외기는 벽체와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 할 것

공동주택 화재예방

소방청 National Fire Agency 한국소방안전원 KOREA FIRE SAFETY INSTITUTE

생활가전기기 전기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전기화재예방 첫걸음 먼지제거! 안전점검 하세요!



멀티콘센트 **용량**을 **확인**하시고 전기제품을 사용할 것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를 **분리** 할 것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뽑을 때에는 선을 잡아 당기지 말고 **플러그 몸체**를 잡고 뽑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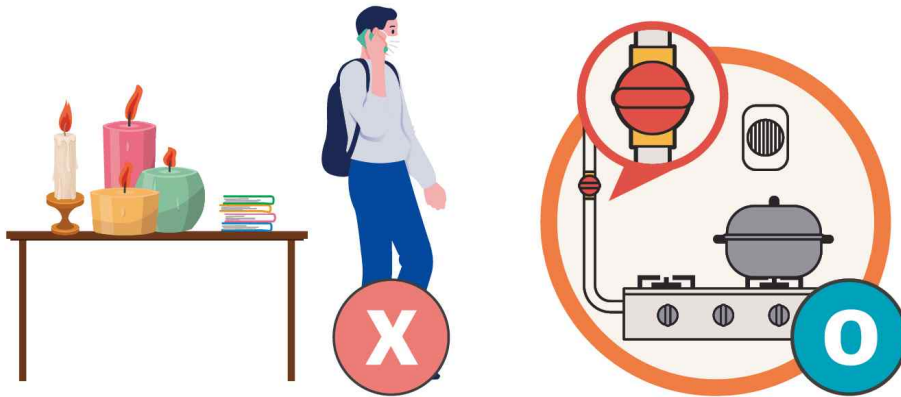
주기적인 **청소** 및 **커버설치**로 화재를 예방할 것

공동주택 화재예방

화기(촛불, 가스 불 등) 사용 시 자리를 비우지 말 것!

화기취급 에티켓! 잘 그셨나요?



촛불, 가스 사용시에 이동금지!

가스밸브를 꼭 잠궜주세요!



촛불, 가스 사용시에는 이동하지 말 것



화기를 안전하게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가스밸브 등 연료 공급밸브 차단여부를 확인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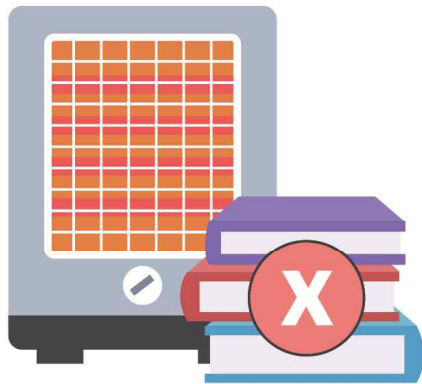
화기 취급 시 이동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불을 끄고 이동 할 것

공동주택 화재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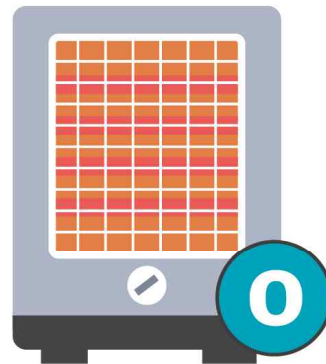
 

겨울철 전기장판, 전기히터 사용 시 화재발생 주의!

겨울철 화재예방! 꺼진 전원도 다시 보자!



타는 물질을 가까이 두면 안돼요!



주변에 물건을 치우세요!



전열제품 주변에 불 붙기 쉬운 **가연성 물질**은 **가까이 두지 말 것**



전기장판은 **라텍스 소재침구**와 **함께 사용하지 말 것**



전기장판은 **둥글게 말아서 보관**, 전기히터는 **먼지 쌓이지 않게 덮어서 보관** 할 것

공동주택 화재예방

소방청 National Fire Agency 한국소방안전원 KOREA FIRE SAFETY INSTITUTE

쓰레기 분리수거장 폐전지류 및 가스통 분리배출!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로 화재예방 실천!



폐전지 전용 수거함에 배출!



잔여가스를 제거한 후 배출!



충전용 보조배터리나 건전지 제거가 안된 완구류 등이 생활계 폐기물과 혼입될 경우 선별 및 재활용 과정에서 **화재사고**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분리 배출 할 것



휴대용가스통 배출 시 반드시 잔여 가스를 제거한 후 배출 할 것

공동주택 화재예방

소방청 National Fire Agency 한국소방안전원 KOREA FIRE SAFETY INSTITUTE

정전 시(전원차단) 자동문 개방방법!

정전 시(전원차단) 자동문을 아래와 같이 개방하세요.



STEP 01

문위에 설치된 “동작센서” 앞에 서거나,
“누름버튼”을 누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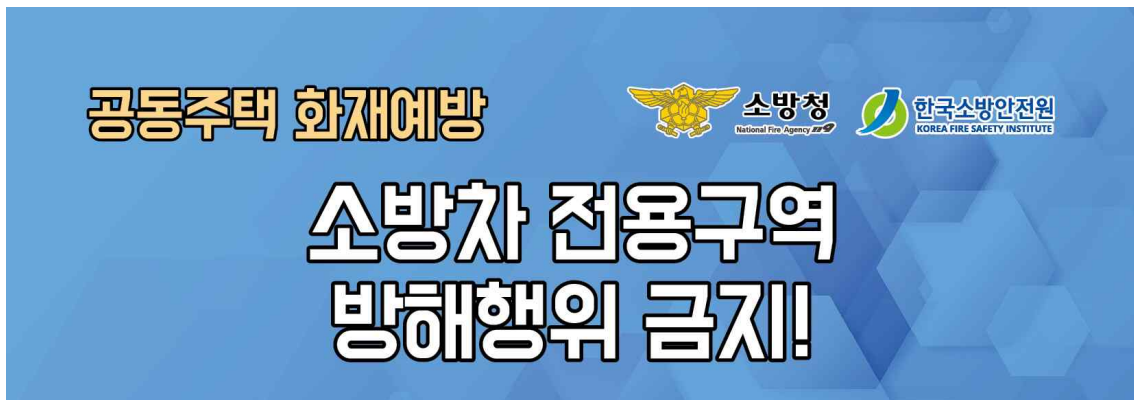
STEP 02

누름버튼을 눌러도 열리지 않는 경우,
우측상단 문틈에 설치된 “전원버튼 눌러
전원을 차단 후 문을 옆으로 세게 밀어
자동문을 개방한다.



STEP 03

전원을 차단해도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소화기, 망치 등으로 자동문 유리의 네모서리
중 한곳을 가격해 깨트린 후 나간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비워 주세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금지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금지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공동주택 화재예방

소방청 National Fire Agency 한국소방안전원 KOREA FIRE SAFETY INSTITUTE

피난시설 내 장애물 설치금지!

대피로는 생명으로



STEP 0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No! 비상구를 막거나 잠그는 행위



STEP 0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No! 피난통로, 피난계단에 물건 적치



STEP 0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No! 방화문에 고임목, 말발굽 설치

공동주택 화재예방

소방청 National Fire Agency

한국소방안전원 KOREA FIRE SAFETY INSTITUTE

피난층 대피가 불가 할 경우 옥상으로 대피!

옥상 대피공간 위치 및 상시 개방여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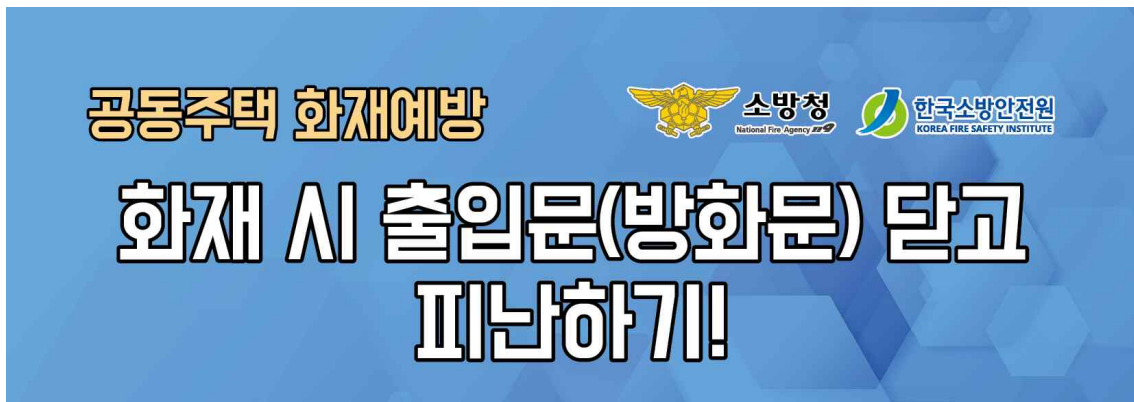


평상시 **옥상 대피경로**, **옥상 출입문 위치**, **피난공간**을 꼭 **확인**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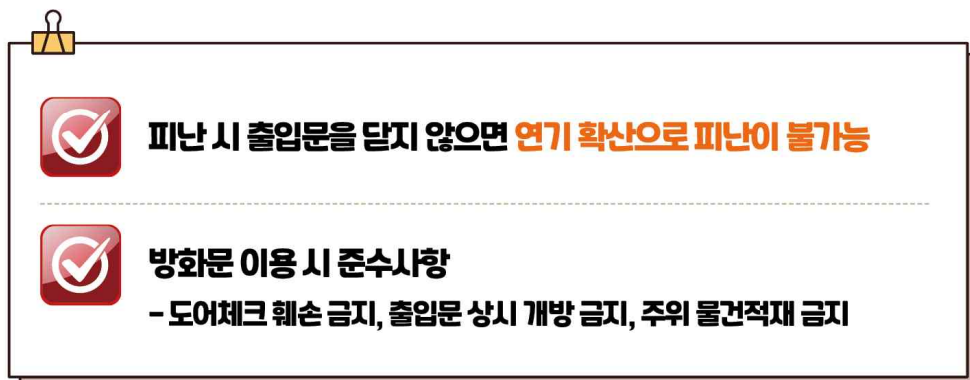


아파트 계단의 불이나 연기 때문에 **옥상으로 피난할 수 없는 경우**

- 집안에서 현관문을 닫고 젖은 수건으로 호흡기를 보호하면서 **창밖으로 구조 요청**
- 경량칸막이, 완강기 등을 이용하여 **이웃집이나 지상으로 대피**



닫힌 방화문은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지름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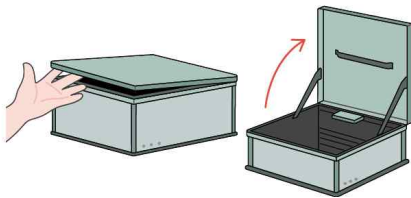


공동주택 화재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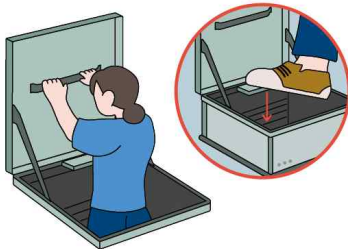
피난시설 사용방법 하향식피난사다리구조

우리 아파트에 설치된 대피시설 알아두기!



STEP 01

하향식 피난사다리 뚜껑을 열어주세요.



STEP 02

누름 레버를 발로 누른 후 안전 손잡이를 이용하여 내려가세요.



STEP 03

안전하게 내려간 후 위 뚜껑을 닫아주세요.

공동주택 화재예방

소방청 National Fire Agency

한국소방안전원 KOREA FIRE SAFETY INSTITUTE

피난시설 사용방법 경량칸막이 구조

우리 아파트에 설치된 대피시설 알아보기!



관리방법

- 불박이장 설치 금지
- 물건 적치 금지



대피방법

- 석고보드 등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이므로 망치 또는 발차기 등으로 파괴 후 옆집으로 탈출

공동주택 화재예방

소방청 National Fire Agency 한국소방안전원 KOREA FIRE SAFETY INSTITUTE

피난시설 사용방법 대피공간 구조

우리 아파트에 설치된 대피시설 알아보기!



※완강기는 3층~10층에 설치됨



관리방법

- 보일러실 창고 등으로 사용금지
- 물건 적치 금지



대피방법

- 아파트 화재 시 현관문으로 탈출할 수 없는 경우 **대피공간으로 대피**하여 방화문을 닫고 **외부에 구조요청**을 하거나, **완강기**를 이용

공동주택 화재예방

전입자를 위한 화재예방 안내문

경량칸막이 구조



전입자를 위한 공동주택 화재안전 수칙



STEP 01 화재시 대피요령

- ①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하고 외쳐 다른 사람에게 알립니다.
- ②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 ③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않도록 하며 계단을 이용해 **육외로** 대피합니다.
- ④ 최종 지정된 **집결장소**로 이동합니다.



STEP 02 대피시설 알아보기

세대 밖으로 대피가 어려울 경우 세대사이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를 통해 **옆 세대**로 대피합니다.



STEP 03 소화기 사용법

세대 출입구 등 **잡보이는 곳에** 소화기를 **비치**합니다.
*분말소화기가 제조일로부터 10년 경과 시 반드시 교체

소화기 사용법을 QR코드로 확인하세요 →



공동주택 화재예방 전입자를 위한 화재예방 안내문 대피공간 구조



전입자를 위한 공동주택 화재안전 수칙



STEP 01 화재시 대피요령

- ①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하고 외쳐 다른 사람에게 알립니다.
- ②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 ③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않도록 하며 계단을 이용해 **육외로** 대피합니다.
- ④ 최종 지정된 **집결장소**로 이동합니다.



STEP 02 대피시설 알아보기

세대 밖으로 대피가 어려울 경우 세대사이에 설치된 **대피공간**으로 피난 후 창문을 통해 **구조요청**을 하거나, **완강기**를 이용해 피난할 수 있습니다.

※완강기는 3층~10층에 설치됨



STEP 03 소화기 사용법

세대 출입구 등 **잘보이는 곳에 소화기**를 비치합니다.
*분말소화기가 제조일로부터 10년 경과 시 반드시 교체

소화기 사용법을 QR코드로 확인하세요 →



공동주택 화재예방

전입자를 위한 화재예방 안내문

하향식피난사다리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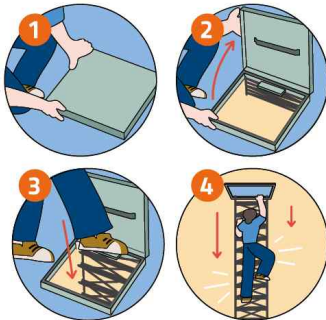


전입자를 위한 공동주택 화재안전 수칙



STEP 01 화재시 대피요령

- ①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하고 외쳐 다른 사람에게 알립니다.
- ②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 ③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않도록 하며 계단을 이용해 **육외로** 대피합니다.
- ④ 최종 지정된 **집결장소**로 이동합니다.



STEP 02 대피시설 알아보기

세대 밖으로 대피가 어려울 경우 세대에 설치된 **하향식피난사다리**를 통해 **아래층 세대**로 대피합니다.



STEP 03 소화기 사용법

세대 출입구 등 **잘보이는 곳에** 소화기를 **비치**합니다.

*분말소화기가 제조일로부터 10년 경과 시 반드시 교체

소화기 사용법을 QR코드로 확인하세요 →

